



2000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정거래제도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1999년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2000년 4월 1일(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1년 4월 1일)부터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며,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종전 매출액의 2%이내에서 5%이내로 상향 조정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 10월 18일 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 부동산증개업 등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중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달라지는 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며,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또는 보험회사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는데 '98년 2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당시 출자한도가 25%였고, 실제 '96년 4월의 출자비율이 24.8%로 축소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순환출자 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5%의 출자한도를 설정하였다.

출자총액한도의 적용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나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민자유치가 필요하나, SOC 투자의 성격상 투자비 소요가 막대한 투자비 회임기간이 길며, 일정기간 경과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처럼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출자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위반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기업 구조 조정 등의 촉진을 위한 예외 인정 예시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신설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동업종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기간(1~2년)내 합병이 예정되는 경우 · 기존사업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 분사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비계열사에 해당하는 분사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유치법인으로서 특정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국내 동일 인측과 동등지분 이상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 ·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지분 이내로 출자하는 경우

동 제도 법위반에 대해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출자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였다.

동 제도의 시행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와 시행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회사로서 편입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1년간 해소시한(2002. 3. 31)을 부여하게 된다.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4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당지원행위가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하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내부통제장치)하고, 소



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유도(외부통제장치)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회사(상장·비상장 회사 불문)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대상으로 하고, 이를 공시토록 한다.

이사회 의결대상 내부거래(대규모 내부거래)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금융 또는 보험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공시대상에는 포함)하도록 한다.

공시대상 내부거래는 모든 이사회 의결 대상 내부거래로 하고 거래상대방 변경, 거래규모·거래가격의 10% 이상 변경 등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 및 공시토록 한다.

공시업무는 공정위가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업무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 등은 공정위가 공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회사는 1억원 이하, 관련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

현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매출액의 2%)가 낮아 부당지원의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의 2% 범위안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5%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거래거절·끼워팔기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는 현행(매출액의 2%)대로 유지한다.

10대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공개제」 실시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등 사업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상품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해당 표시·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표시·광고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10대 업종 및 해당 중요 정보 ▣

10대 업종	해당 중요 정보
부동산 중개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보상기준 등
학습교재 판매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후의 철회 가능성여부와 철회 방법 등
학원 운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료 등의 환불 가능성여부 및 환불 기준 등
증권투자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시기 등
장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원단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 제조지역·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체육시설 운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
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보상기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등
사진현상·촬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 보상기준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실,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완구제조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함, 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